

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공고

「관세법」 제93조제19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, 제44조제7항, 「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」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4. 08.

산업통상부장관

1. 위탁기관 :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
 2.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(역삼동, 황화빌딩 7층)
 3. 위탁업무의 내용 : 「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」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
 4. 제출서류 : 「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
- ※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(☎ 044-203-5251) 또는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(☎02-3453-406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